

가톨릭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Ex Corde Ecclesiae*에 따른
한국의 가톨릭대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규정
(주교회의 2011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목차>

서론

제1부 한국의 가톨릭 고등교육

1. 한국 가톨릭 대학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
2. 교육에 관한 한국정부의 법령
3. 대학 운영에 관한 기준
4. 대학의 종교적 자유
5. 교도권의 역할

제2부 가톨릭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Ex Corde Ecclesiae*에 따른 규정

- 제1조. 규정의 본질
- 제2조. 가톨릭 대학의 본질
- 제3조. 가톨릭 대학의 설립
- 제4조. 대학 공동체
- 제5조. 교회 안의 가톨릭 대학
- 제6조. 사목적 봉사직
- 제7조. 협력

결론

서론

가톨릭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Ex Corde Ecclesiae*에 따른 한국의 가톨릭 대학¹⁾에 관한 규정(the Ordinance)은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의 가톨릭 정체성을 점검하고 핵심 사명과 목표를 검토할 때 필요한 한국 교회의 지침이다. 또한 보편교회의 가톨릭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Ex Corde Ecclesiae*에서 제시된 신학적·사목적 원칙을 개별 대학 안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제정한 실행 지침이다.

제1부에서는 한국 가톨릭 고등교육의 역사와 현황, 대학 운영의 기준과 교도권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제2부에서는 위 교황령의 2부 ‘일반적 규범(the General Norms)’에 일치하는 목적을 그대로 따랐으며, 교황령 전체와 교회법전의 관련 법조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따라서 본 규정은 보편교회가 제시한 신학적·사목적 원칙을 한국의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의 특별한 문화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세부 지침을 주고자 하였다.

제 1부 한국의 가톨릭 고등교육

1. 한국의 가톨릭 대학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

한국에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교단과 교파들이 존재한다.²⁾ 그 중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는 가장 크고 활발한 종교들이다.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53%가 스스로 종교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총인구 중 불교 인구는 23%,

1)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의 가톨릭 대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2011년 현재 한국에는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의 적용을 받는 교회 대학교와 대학이 없다.

대 학 명	지 역	운영 주체	설립년도
가톨릭대학교	서울, 부천	서울대교구	1855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	대구대교구	1952년
서강대학교	서울	예수회-서울대교구	1960년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	부산교구	1964년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	광주대교구	1966년
가톨릭상지대학	안동	안동교구	1969년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	인천교구	1995년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청원	청주교구	1998년
광주가톨릭대학교	서울	광주대교구	1965년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	수원교구	1983년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	대전교구	1989년

2) “2008년 현재, 한국에는 자생 종교와 외래 종교 등을 합해 510여 개 이상의 교단·교파가 존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08), 3쪽.

개신교 18%, 천주교 11% 순이다.³⁾ 이러한 다원적 종교 상황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 안에서 종교 간의 화합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 최초의 가톨릭 고등교육기관은 초기 교회의 100년간의 박해시기(1874-1882) 중이었던 1855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부주교였던 메스트르(Maistre) 신부는 충청북도 배론 지역에 성요셉 신학교를 세우고 푸르티에(Pourthié) 신부를 교장으로 임명하여 10여 명의 학생에게 철학 과정을 위한 기초 과목들(교리, 한문, 라틴어, 일반 상식, 수사학)을 가르쳤다. 이 신학교는 비록 일반 교육기관이 아닌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한국 역사 안에서 근대식 고등교육 기관의 효시였다는 큰 의의를 지닌다.

2010년 말 현재, 한국에는 7개 대신학교와 1개의 전문대학교를 포함한 11개 가톨릭 대학들이 있다. 가톨릭 대학은 한국 안에서 다른 종교계 대학교들(60개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으며, 전체 고등교육 기관 중에서 0.2%에 불과하다. 또한 대신학교를 제외한 가톨릭 대학에는 재적 학생의 대부분이 비가톨릭이며, 그들의 종교적 배경 역시 다양하다.

이런 종교적 다양성 내지 양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제공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교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서민과 소외 계층까지 포용하기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한국 사회 안에서 교육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에도 가톨릭 대학은 그 교육의 헌신과 성과에서 다른 대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⁴⁾

2. 교육에 관한 한국 정부의 법령

한국의 모든 교육기관은 헌법에 기초하여 국가의 법령 체계를 따라 설립되고 운영된다. 한국 정부는 대학의 설립, 입학 정원, 학과 개설, 재정 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들에 관하여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통하여, 그리고 각종 국가적 교육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원에 대학의 지원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대학들을 통제하고 있다. 한국의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대학은 정부의 고등교육 법령체계, 정책과 운영에 의해 깊은 영향과 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전혀 무관한 ‘자유대학(free university)’ 유형의 고등교육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통계청, ‘성/연령/종교별 인구-시군구’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참조.

4) 『한국가톨릭학교교육지침서』(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2009), 서언.

3. 대학 운영에 관한 기준

한국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 - 인간을 새롭게 하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 에 헌신하는 동시에, 학문적 수월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교육에 관한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킨다. 한국 사회는 발달된 고등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학문과 전문가 양성에 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바, 한국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은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4. 대학의 종교적 자유

한국의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은 본질로나 헌법에 의하여 종교적 자유를 누린다. 종교적 자유는 가톨릭 대학이 복음화 사명에 충실하고 다양한 종교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가톨릭 대학은 한국의 다종교 환경 안에서 매일의 영적 양식을 제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전인적 발달을 증진하고 자유와 사랑의 복음 정신을 전파하여 사회를 새롭게 하는 복음화의 중요한 도구이다.

5. 교도권의 역할

지역 주교와 그 외 교도권은 가톨릭 대학 측과 협의·협력하여 고등교육 기관을 위한 상설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주교와 교도권은 가톨릭 기관들이 가톨릭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목적 역할을 완수하도록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상설 지원 체제에 힘입어 가톨릭 대학은 교도권과 많은 평신도들(법인이사, 고위 행정가, 교수, 직원)과 협력하여 대학을 발전시키고 사명을 완수한다.

이런 교도권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2006년 『한국가톨릭학교교육헌장』을 반포하여, 가톨릭 대학을 포함한 모든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 사명, 교육과정, 운영, 협력에 관하여 원칙을 천명하였다. 또한 2009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는 『한국가톨릭학교교육지침서』를 발간하여, 위 『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과 실행 지침을 제시하였다.

제 2부 가톨릭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Ex Corde Ecclesiae*에 따른 규정

제1조. 규정의 본질

- ① 본 규정은 교회 대학교와 대학들을 제외한⁵⁾ 한국의 모든 가톨릭 대학교와 다른 가톨릭계 고등교육기관들에게 적용된다.⁶⁾
- ② 교황령의 일반적 규범과 본 규정은 가톨릭 대학의 법인 이사회에 의해 인지되고 준수된다.
- ③ 교황령의 일반적 규범과 본 규정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정관과 각종 규정에 본질적으로 부가된다.
- ④ 교도권은 대학의 정관과 정부의 관련 법령을 고려하면서 본 규정의 내용에 준하여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들을 감독할 책임을 지닌다.

제2조. 가톨릭 대학의 본질

- ① 가톨릭 대학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화와 전인교육에 공헌하는 것이다. 우선 신앙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고 따르는 인생관을 확립하도록 도우며, 동시에 전인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도덕성과 정서를 함양하며 사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익혀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⁷⁾
- ② 대학의 일반적 사명은 ‘연구와 교육과 봉사’이다. 가톨릭 대학은 대학에 부여된 정당한 학문적 자유를 누리며 학생들을 자유롭게 교육하며 자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한다. 대학의 자율성은 언제나 존중되고 신장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은 모든 유형의 진리를 자유롭게 탐구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사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⁸⁾
- ③ 특별히 학문의 자유는 가톨릭 대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가톨릭 대학은 모든 교수들의 “연구와 교수의 자유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가 진리와 공동선의 테두리 내에서 보존되는 한, 각 개별 학과목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존중되도록”⁹⁾ 조치한다. 교구장은 공동선과 신앙의 통합과

5) ECE II, 제2조 ② “가톨릭대학교의 부분인 교회 대학들을 포함한, 교회 대학교 및 대학은 교황령 *Sapientia Christiana*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6) The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Directives to Assist in the Formation of the Ordinances for the Apostolic Constitution “EX CORDE ECCLESIAE,” B. 1.

7) 『한국가톨릭학교교육현장』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2006), 1.2항.

8) ECE I, 12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현장 (*Gaudium et Spes*), 59항; 그리스도인교육에 관한 선언 (*Gravissimum educationis*), 10항.

9) ECE II, 제2조 ⑤.

일치를 보존하고 신장시키기 위하여, 가톨릭 대학의 교수들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지닌다.¹⁰⁾

- ④ 가톨릭 대학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보존하는 가운데, 대학의 가톨릭 정체성을 증진시키고 교회의 가르침과 학문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천부적 권리인 종교적 자유 역시 존중할 사명을 수행한다.¹¹⁾
- ⑤ 가톨릭 대학은 가톨릭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Ex Corde Ecclesiae*에 맞춰 자신의 본질적 성격을 분명히 할 책임을 지닌다. 가톨릭 대학의 본질적 성격은 대학의 사명 진술문과 자신의 교회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다른 문서들에 잘 드러나며, 자신의 가톨릭 정체성에 대한 실천적인 노력 속에서 잘 나타난다.¹²⁾
- ⑥ 가톨릭 대학, 특히 법인이사회, 고위 행정가, 교직원들은 대학의 사명 진술문을 대학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가톨릭 본질과 성격을 증진하고 강화시킬 책임을 지닌다.¹³⁾

제3조. 가톨릭 대학의 설립

- ① 한국의 모든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은 교황청,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 교구장 혹은 주교들에 의해 설립되거나 인준된다. 또한 수도회, 재단 법인, 평신도 개인이나 평신도 단체 역시 교도권의 정당한 승인을 얻어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¹⁴⁾
- ② 가톨릭 대학은 설립되는 시점에서 승인하거나 인준한 교회의 권위와 대학의 교회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사도좌 설립 대학, 주교회의 설립 대학, 교구 설립 대학, 수도회 설립 대학, 법인 설립 대학, 개인 설립 대학 등이 그것이다.¹⁵⁾
- ③ 어떤 대학도 관할권자의 승인 없이 ‘가톨릭’ 학교라고 불리거나 인정받을 수 없다.
- ④ 교회의 사전 허락 하에, 수도회와 다른 공적 법인은 대학 설립에 관한 계

10) ECE II, 제2조 ⑤.

11) ECE I, 26항, 27항; ECE II, 제4조 ④.

12) ECE II, 제2조 ③.

13) ECE II, 제4조 ①.

14) ECE II, 제3조 1-3항; 교회법 제322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는 제312조에 언급된 교회의 관할권자의 정식 교령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1항), “그러나 [그] 정관의 승인이 그 단체의 사립 성격을 바꾸지는 아니한다.”(2항).

15) The Application of Ex Corde Ecclesiae for the United States,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Washington, DC, 2000), Art. 2, §. 2.

획서를 정부 당국에 제출하기 적어도 일 년 전에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는 한국 주교회의의 검토를 거쳐 관할권자가 인준한다.

제4조. 대학 공동체

- ① 대학의 가톨릭 정체성을 보호하고 강화시킬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학 자체에 있다. 법인이사회, 고위 행정가,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중요한 과업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¹⁶⁾
- ② 법인이사회는 가능한 교회에 헌신적인 가톨릭 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법인 이사들은 대학의 가톨릭 정체성을 대학의 사명 진술문과 이에 동등한 문서에 반영하고¹⁷⁾, 공동 관심사에 관해 지역 주교 및 교구청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가톨릭대학교에 관한 교황령과 고등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들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대학의 구조와 운영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대학의 사명 진술문과 교육 과정 그리고 연구, 교육, 봉사의 영역을 교황령과 본 규정을 따라 검토할 의무를 지닌다.¹⁸⁾
- ③ 가톨릭 대학의 총장은 가톨릭 신앙을 가져야 한다. 대학의 고위 행정가는 교직원들을 채용할 때에 대학의 가톨릭 정체성, 대학의 사명, 대학의 종교 행위에 대해 알려주고 그것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대학의 고위 행정가는 지역 주교와 함께 대학의 가톨릭 정체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또 가톨릭 대학이 지역 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자주 대화해야 한다.¹⁹⁾
- ④ 대학은 교수를 임용하고 승진시킬 때,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임면 관련 법률 조항을 고려하는 가운데 신앙을 증거 할 가톨릭 신자들을 선발하며, 신자 교수들이 교수 집단의 다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²⁰⁾ 가톨릭과 비가톨릭을 불문하고 모든 교수들은 높은 수준의 학문적 수월성과 인성을 지녀야 할 뿐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²¹⁾ 가톨릭 대학은 가능한 신학과를 설립해야 하고, 신학자들은

16) ECE II, 제4조 ①. 법인이사회, 총장, 경영인, 고위 행정가 등은 대학을 운영하는 고위 직위를 가진 이들을 지칭한다. 각 대학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7) ECE II, 제4조 ②.

18) 『한국가톨릭학교교육헌장』, 3.1항.

19) ECE I, 24항; ECE II, 제4조 ①.

20) ECE II, 제4조 ④.

21) ECE I, 21항; 27항; 39항.

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대해 가르치고, 또 이를 사회의 민감한 이슈들에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안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신앙선서(Professio Fidei)'를 해야 한다.²²⁾

- ⑤ 가톨릭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교회의 도덕적·종교적 원리와 사회교리를 배우고, 성사 참여와 예비자교리 그리고 가톨릭 영성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톨릭 대학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문과 미래 직업에 관련된 윤리와 도덕적 이슈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²³⁾

제5조. 교회 안의 가톨릭 대학

- ① 가톨릭 대학은 가톨릭교회의 지적 전통,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의 신앙생활을 증진하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개발하고 진행해야 한다.²⁴⁾
- ② 이 계획에는 복음적 가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 사회정의 구현,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²⁵⁾
- ③ 지역 주교는 그의 교구 안에 존재하는 가톨릭 대학을 돌보며 대학의 가톨릭 본질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주교는 가톨릭 대학의 역할과 공헌에 대해 자주 공적으로 발언하고, 유사시에는 대학의 가톨릭 정체성을 적극 옹호해야 한다.²⁶⁾
- ④ 지역 주교는 대학의 책임자와 함께 협력하여 가톨릭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Ex Corde Ecclesiae*가 목표했던 바를 구현해야 한다.
- ⑤ 한국의 주교들은 본 규정과 『한국가톨릭학교교육헌장』(2006)과 『한국가톨릭학교교육지침서』(2009)를 참고하여 가톨릭 대학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기본 원리를 천명해야 한다.

제6조. 사목적 봉사직

- ① 교구장은 가톨릭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을 사목적으로 배려할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²⁷⁾

22) ECE I, 19항; ECE II, 제4조 ⑤.

23) ECE I, 33항, ECE II, 제4조 ④.

24) ECE I, 1항, 20항, 25항.

25) ECE I, 33항; ECE II, 제7조.

26) ECE I, 28항, 29항, 41항; ECE II, 제5조 ①-③.

27) 교회법 제813조 "교구장은 학생 사목을 깊이 배려하여 본당 사목구를 설립하거나 적어도 이를 위하여 고정

- ② 가톨릭 대학은 교구장들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교목 프로그램, 즉 성사 거행(특히,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전례 거행, 기도와 영적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²⁸⁾ 특별히 교목 활동을 위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선발할 때 교구 주교나 수도회 장상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²⁹⁾
- ③ 대학은 교구장과 협력하여 교직원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존하며, 비신자들을 위해 사목적 배려를 하고 교회일치 및 종교간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³⁰⁾ 이러한 사목적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학과 교구장은 교황청의 규정과 권고 및 한국 주교회의의 지침과 사목교서를 고려해야 한다.

제7조. 협력

- ① 가톨릭 대학은 보편적 가톨릭 학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내외 다양한 가톨릭계 대학들, 기관들, 전문 협회들과 잘 협력해야 한다.³¹⁾
- ② 가톨릭 대학은 정부 부처, 지역 협의회, 국립·사립대학과 협력하면서, 정의평화 증진, 인간생명 존중, 빈곤과 부당한 차별 철폐, 사회의식의 성장 그리고 인류 문화의 발전 등에 대하여 교회의 사회교리와 도덕적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해야 한다.³²⁾

결론

- 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가톨릭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Ex Corde Ecclesiae*의 원칙들이 한국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제시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앞으로 계속하여 교황령과 본 규정의 핵심 내용이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 안에서 잘 구현되도록 세심하게 지도하고 검토하며 평가할 것이다.
- ② 우리는 가톨릭 대학이 한국과 세계 안에 그리스도교 문화의 성장과 인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하며, 전 교회 공동체가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이 발전하고 쇠신하도록 항상 도와주길 간절히 바란다.

적으로 사제들을 선임하고, 또한 비가톨릭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교에 가톨릭대학교 센터를 세워 젊은이들에게 도움 특히 영성적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8) ECE I, 39항.

29) ECE I, 25항; ECE II, 제6조 ②.

30) ECE I, 15항, 17항, 18항, 28항, 43항, 44항.

31) ECE I, 27항, 37항; ECE II, 제7조 1항;

32) ECE II, 제7조 ②; 『한국가톨릭학교교육헌장』, 5.5항, 5.6항.